

# NEWSLETTER

December 2022

회계감리대응팀

Accounting Audit Inspection Team

## CONTACT



변호사 박영욱

T: 02.772.4422  
E: [younguk.park@leeko.com](mailto:younguk.park@leeko.com)



변호사 김상훈

T: 02.772.4425  
E: [sanghoon.kim@leeko.com](mailto:sanghoon.kim@leeko.com)



회계사 류승원

T: 02.6386.7979  
E: [seungwon.ryu@leeko.com](mailto:seungwon.ryu@leeko.com)

## 2022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 ... 2022년 재무제표 작성 시 사전에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내년에 수행할 2022년 재무제표 심사업무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대상 업종을 사전 선정하여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회계이슈 및 대상업종은 구체적으로 ①수익인식(비제조업), ②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전업종), ③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제조업, 종합건설업, 운수업), ④사업결합(전업종)입니다.

###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

수익 인식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인식모형(단계)에 따른 수익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식별 ③거래가격 산정</li> <li>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인식</li> </ul> </li> <li>수익인식 관련 주석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주별(계약 유형 및 존속기간별 등) 수익 구분, 계약잔액,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li> </ul> </li> </ul> <p>※ (업종) 비제조업(단, 건설업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및 충분한 검증절차</li> <li>사업 특성을 고려한 영업·투자·재무활동별 현금흐름정보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현금거래 등 관련 주석 공시</li> </ul> </li> </ul> <p>※ (업종) 전업종</p>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불이행·연체 같은 계약 위반, 채무자의 파산가능성 등</li> </ul> </li> <li>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li> </ul> <p>※ (업종) 제조업(단, 의약품 및 전자부품 업종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대와 식별가능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공정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가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근거</li> </ul> </li> <li>사업결합 내용 등 관련 주석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대가, 주요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금액 등</li> </ul> </li> </ul> <p>※ (업종) 전업종</p>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업무는 통상 최근 공시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개시되는데, 공시자료 등에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회사에 수정공시를 권고하게 됩니다.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면 지도 또는 경조처로 심사업무가 종결되나 만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감리로 전환될 경우에는 중과실 이상의 행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나아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해임(면직)권고, 직무정지, 검찰고발(통보),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주권매매거래 정지, 손해배상소송 등 당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감리 전환 시에는 회사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상향(5억원 → 10억원)하고 포상금 산정 시 자의적, 정성적 차감 요소(협조 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를 최소화 할 예정에 있는 등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신분 누설 또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있는 점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하에서는 회사에 불만을 품은 이해관계자의 악의적 허위 제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쟁점이 많은 회사일수록 사전에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적절히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재무제표 중점 점검 대상 회계이슈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회계이슈 및 업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익인식

금융감독원은 2018년에 시행된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 정착을 독려하기 위해서 비제조업(단, 건설업 제외)<sup>1</sup> 영위 회사들이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1)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및 (2) 수익구분, 계약잔액, 수익인식판단근거 등에 대한 주석공시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②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업종을 대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검증 절차(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를 통해 실재성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히 주석을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경제 악재로 기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가 손실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sup>2</sup> 영위 회사들이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는지 여부 및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는 (1) 매 보고기간 말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연체 등 계약 위반 여부 및 채무자의 파산가능성을 살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고, 그에 따라 해당 측정 기간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체 대분류 코드 중 C00000(제조업)과 F00000(건설업) 제외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체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중 C00000(제조업)과 F41000(종합건설업) 및 H00000(운수업)이 해당. 단, C00000(제조업) 중 C21000(의약품) 및 C26000(전자부품)은 제외함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총당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2) 기대신용손실 및 손실총당금 평가를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총당금 변동 내역 및 변동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④ 사업결합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결합 사례가 증가하는 한편 그 방법도 다양화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결합 회계처리(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03호)에 따라, (1) 취득자산과 인수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하며, (2)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시사점

2022년 재무제표 결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 및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하여는 내년 중 금융감독원이 심사업무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그 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금융당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계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계감리대응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감리 분야에서 감독기관 출신의 고문 및 변호사들과 감리 실무를 장기간 직접 수행한 회계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중요한 감리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한편, 변화하는 회계감독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하여도 선도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사무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우 04532)  
판교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타워 3층 (우 13529)  
Tel : 02-772-4000 | Fax : 02-772-4001/2 | E-mail : mail@leeko.com | www.leeko.com